

2024년도 미래환경산업육성용자 시설설치자금 지원사업 안내서

2024. 4. 18.



목 차

1. 사업 개요	5
2. 사업 신청	6
3. 지원기업 선정 절차	12
4. 사업 관리	15
5. 완료 보고	16
 [붙임 1] 환경정책자금 대출심사 가능 사전 상담확인서	18
[붙임 2] 환경정책자금 신청 서약서	19
[붙임 3]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신청 서식	20
[붙임 4] 융자 예비승인서	22

사 업 안 내 서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 중소·중견 환경기업 육성자금을 장기·저리 대출 지원

나. 추진일정

- (용자접수) 2024.4.29.(월) 09시 ~ 5.8(수) 18시
※ 접수일시 이전 접수규모 초과 시 신청서 제출 완료 순으로 접수 마감
- (결과통보) 접수 마감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 과다한 용자신청 등 부득이한 상황 또는 용자심의위원회 심의가 요구되는 경우 결과통보일 연장(최대 14일)이 가능함.
- (자금대출) 기술원 결과통보(예비승인서 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
대출 승인 자금의 10% 이상 인출
※ 「환경정책자금 용자 운용요강」 제24조(용자금의 최초인출기간)
- (완료보고) 용자금 사용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다. 용자 규모(연간) 1,200억 원

라. 접수 규모(제2차) 800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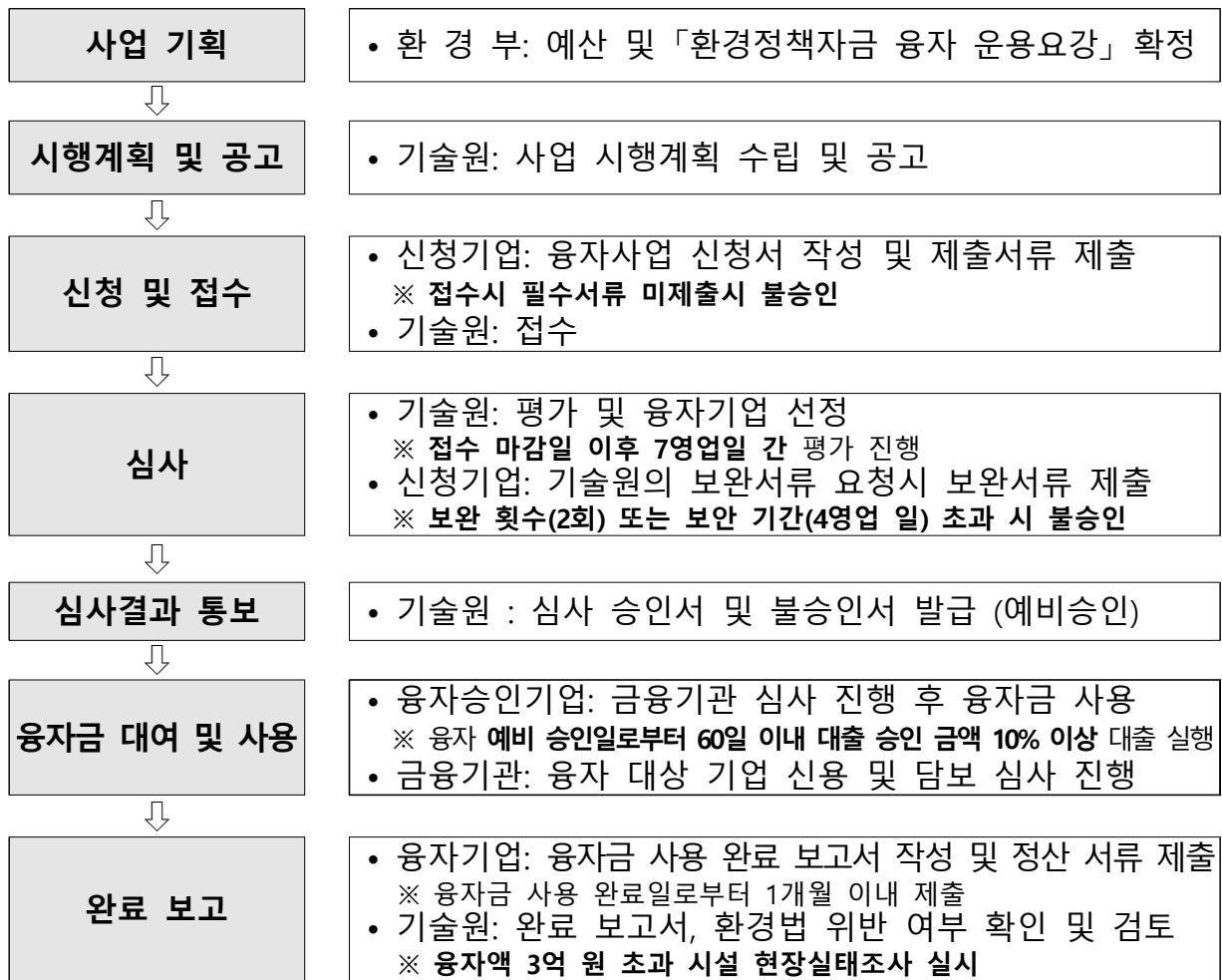
마. 용자금 사용 기간

- 기술원 예비승인일로부터 ~ 180일 이내
※ 「환경정책자금 용자 운용요강」 제20조(용자금 사용기간)에 따라 연장 가능

바. 지원방법

- 담보대출 방식(용자 취급 은행과 담보 협의 필요)
 - 취급은행(14개) : 광주은행, 경남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한국산업은행, 수협 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바. 추진 절차



2. 사업 신청

가. 신청 대상

지원분야		지원대상
환경산업	시설설치자금	중소·중견 환경기업

- 환경산업 : 「환경정책자금 융자 운용요강」 제3조(용어의 정리) 제3호 해당 기업

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대기, 수질, 소음·진동, 생태계 등 환경 전반에 걸쳐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 하고 자원의 효율을 높여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시설·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음의 1)에서 4)까지의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1) 환경오염물질 배출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의 측정·예방·최소화·복구 등에 필요한 시설·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 2) 폐자원에 아이디어나 디자인 등을 더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재활용 산업 등 자원을 순환시켜 환경의 보전·개선에 기여 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 3) 환경 기술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 4) 그 밖에 환경의 보전·관리·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6조의2에 따라 지정된 민간 검사기관
 - ③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재활용 기업
 - ④ 환경부와 통계청의 「환경산업특수분류」의 ‘분류 설명’, ‘분류 명칭’ 및 ‘포함 품목명’ 상 명시된 서비스와 제품에 해당하는 기업
 - ⑤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사업자 및 물산업 통계조사 대상 기준인 「물산업 분류」의 ‘항목’과 ‘정의’에 해당하는 기업
 - ⑥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단, 환경표지 인증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 시설에 한정하여 ‘시설설치자금’ 지원)
 - ⑦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재제조산업체로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상의 재제조 대상 제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기업(단, 재제조 대상 제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 시설에 한정하여 ‘시설설치자금’ 지원)

나. 신청 제외 대상

- 「환경정책자금 융자 운용요강」 제7조(지원제외) 해당 사업자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사업자
 - “시설설치자금”, “오염방지지설자금”은 융자승인과 동일한 내역으로 타 부처와 기관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은 사업자는 제외하되, 총사업비가 타 기관의 지원 한도를 초과하여 중복되지 않는 부분은

용자신청과 지원이 가능하다.

- 과거 1년간(용자신청 마감일이 속한 달(月)로부터 기산) 제3조 제20호의 각종 환경법 위반으로 다음 각 목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자로, 이에 대한 행정적 또는 법적 다툼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30일(1개월) 이상의 사업장 조업·영업 중지(특정 장치·설비의 가동중지 제외) 또는 이를 갈음한 과징금
 - 지자체 등 관할 기관으로부터 환경법 위반에 따른 고소·고발
- 과거 1년간(용자신청 마감일이 속한 달(月)로부터 기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용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29조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해당 감독기관으로부터 징역 또는 벌금의 처분을 받은 주유소 사업자
- 과거 1년간(용자신청 마감일이 속한 달(月)로부터 기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0조 등의 처벌을 받은 사업자
- 제26조의 용자승인 취소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사업자
- 제26조 제1항 제1호(허위신청) 또는 제2호(목적외사용)에 해당하여 회수 결정된 용자 원리금의 회수완료일로부터 5개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업자
- 제21조 제4항의 승인포기 신청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제2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최초인출기간 만료로 승인 취소된 사업자로, 당해 최초인출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제21조 제4항에 따른 일부 승인포기 신청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제26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용자 승인액 중 일부가 취소된 사업자로, 용자지원 연도로부터 3개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제30조 제1항 제3호의 ‘성과보고’ 의무에 불응·거부하거나 제출 내용이 허위·부실한 사업자로, 보고의무 연도 직후 1개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업자
- 기업 및 임직원의 각종 부정한 행위와 민·형사 사건으로 주요

일간지에 언론 보도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자

다. 지원 내용

○ (지원범위) 「환경정책자금 융자 운용요강」 제6조(지원범위)

지원분야	지원 범위
시설설치자금	- 융자신청서 접수일 이후 70일 이내에 착공 또는 착수하는 공사, 제작, 시설 - 2023년 10월 1일 이후 착공(또는 착수)하여 융자신청서 접수일 현재 미완공* 또는 진행 중인 장치와 시설 * 미완공 : 준공, 가동개시, 사용승인 등의 전 단계 또는 제작·설치·공사 진행 중인 장치와 시설물

※ 세부 융자 내용은 「환경정책자금 융자운용요강」 제6조(지원범위) 제2항, 별표1 참조

○ (지원제외) 「환경정책자금 융자 운용요강」 제7조(지원범위) 제1항에 해당하는 항목은 지원 제외

- 토지(부지) 매입비(단, 아파트형 공장 입주 시의 부지 지분 부분은 인정)
 - 부가가치세 등 각종 국세, 지방세 및 수입인지·증지 비용
 - 융자신청자 직접 사용·운영이 아닌 임대·매각에 의한 수익 목적시설
 - 적법한 세무신고를 하지 않은 무자료 거래에 의한 지출
- * 무자료 거래 : 현금수수, 물물교환, 채무상계 등

○ (융자조건)

지원분야		대출기간 ※ 연장 불가	사업자당 지원한도	대출금리
환경 산업	시설설치자금	3년 거치 7년 상환 (10년 이내)	100억 원	분기별 변동금리

※ 지원 분야별 복수 신청가능, 단 동일한 시설, 장치, 용도 등으로 중복 신청 불가

라.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환경기술산업 원스톱 서비스(<https://www.ecosq.or.kr>, 에코스퀘어)
- ※ 우편 접수(서면) 및 이메일 접수 불가

마. 제출 서류

○ 공통제출 서류

구분	제출서류	내 용
1 (필수)	대출심사 가능 사전상담 확인서	<서식 1> 인쇄 → 선택 은행(영업점)에서 용자 상담 후 확인 날인 한 서류를 전자파일(PDF 등)로 등록 ※ 향후 신용평가·여신심사를 하고, 용자금을 취급할 은행 영업점을 신청자가 직접 선택
2 (필수)	<서식 2> 서약서	규정, 절차에 대한 기본 이해와 사전 고지 내용을 숙지하고 용자 신청한다는 확인 서류
3 (필수)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 용자접수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인 증서	• 발급처 -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 중견기업확인서: 중견기업 정보마당 (https://www.mme.or.kr)
5 (필수)	사업장 사업자등록증	• 나이스신용정보 제출(조회) 동의 및 등록하여 직접 발급 제출 생략 가능 ※ 위 나이스신용정보 방식 거부·미제출 시, 직접 스캔본을 등록해야 하며 누락, 부실, 부족한 경우 모든 책임과 불이익은 신청기업에 있음.
8 (필수)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9 (필수)	[별표 3]우선 지원 순위평가 항목에 따른 기타 해당 서류	• 서류 종류는 [별표 3] 참조 ※ 서류 미제출 시 점수 불인정(사후 보완 제출 불가)

○ 시설설치자금 제출 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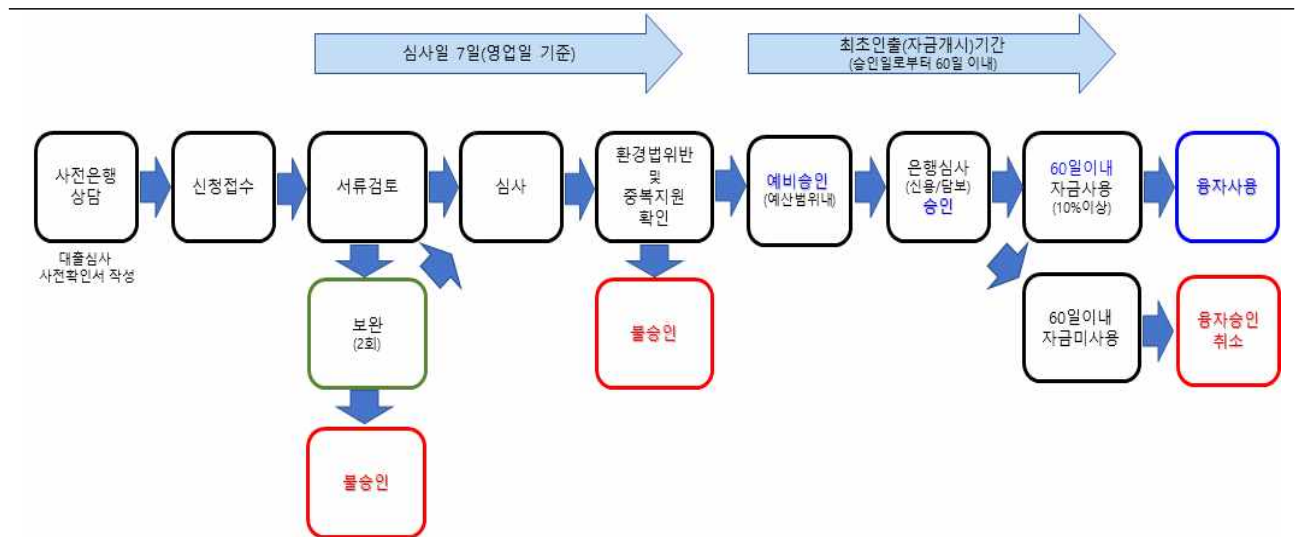
구분	제출서류	내용 및 예시
1 (필수)	환경산업체 입증 자료 ※ (참조) 환경산업특수분류표, 물산업분류표	• 용자요강 제3조 제3호의 ‘환경산업체 등’에 해당함을 판단할 수 있는 각종 제시 자료 (예시)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폐자동차재활용업 등록증, 제조·생산품 팸플릿, 카탈로그 등 ※ 폐기물 재활용업의 경우,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을 대신하여 관할 지자체의 ‘적정통보서’ 인정
2 (필수)	장치, 시설 시공·제조업체 사업자등록증 (기성품 구매 시 구매처 사업자등록증)	• 턴키 등 일괄계약 공사의 경우 직접 계약 시공사의 사업자등록증 ※ 자가시공(직접제작)의 경우, 용자신청 시설 제작에 대한 자체 및 반제품 구매처 사업자등록증
3 (필수)	용자신청 시설, 공사의 견적서 및 계약서 (기성품 구매 시 사양서, 브로셔, 팸플릿 등)	• 턴키 등 일괄계약 공사의 경우 직접 계약 시공사의 견적서 및 계약서(단, 견적서의 경우 공사 설치 시설 별로 재하도·위탁 업체 명의의 견적서 인정) ※ 자가시공(직접제작)의 경우, 용자신청 시설 제작에 대한 자체 및 반제품 구매에 대한 견적서 및 계약서 일체
4 (필수)	시설장바건축 세부 도면	• 차량운반구 또는 기성 판매제품 구매의 경우에는 팸플릿, 사양서 등으로 대체 가능
5 (필수)	용자금 사용 사업장 공사현장 최근 사진 (1개월 이내)	• 용자금 사용계획서 상의 시설 설치 예정지, 혹은 교체 전 설비 등 신청서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제출
6 (선택)	건축 허가서 (건축비 용자신청 시 필수)	• 공장 건물 등 신·증축인 경우(가설 건축물 포함) • 산업단지 입주 시 관련 허가, 승인, 계약서 등
7 (선택)	사전 설치 인·허가 또는 신고서	• 용자신청 시설물의 설치에 대하여 각종 법규 상 사전 인허가,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에 제출

바. 주요 기타사항

- (융자취급은행 사전상담 필수) 환경정책자금 융자금 대출심사 가능 사전상담 확인서 반드시 제출(붙임 1 참조)
- (서약서 작성) 규정, 절차에 대한 기본 이해와 공고 내용을 숙지하고 융자 신청한다는 확인 서류(붙임 2 참조)
- (서류제출 기간) 융자접수 시 필수서류 반드시 제출, 미제출 시 불승인
- 사업 안내서에 표시되지 않은 세부적인 내용은 「환경정책자금 융자 운용요강」을 따름

3. 지원기업 선정 절차

가. 지원 절차



나. 지원 평가

○ 융자지원 심사

- (심사기간) 접수 마감일 이후 7일 이내

※ 융자신청 과다 등 부득이한 상황 또는 융자심사위원회의 심의가 요구되는 경우 심사 기간은 7일을 초과하여 최대 14일 연장 가능

- (서류심사) 신청 자격, 융자금 사용계획 적정성 등 심사
- (환경법 및 기타 법령위반 조회) 관할 기관을 통하여 환경법 '중대위반' 및 기타 법령 위반 이력 조회

※ 기타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법」

- 법령 위반 이력 조회 기간: 접수 월 기준 과거 1년간(월 단위로 조회)
- 중대위반* 내용
 - * 30일 또는 1개월 이상 사업장 조업·영업 정지(특정 장치·설비 가동 중지 제외)처분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
 - * 지자체 등 관할 기관으로부터 환경법 위반에 따른 고소·고발

다. 대상기업 선정

- 신청기업의 우선지원 순위평가 후, 평가 순위에 따라 융자금 한도 내에서 '우선지원'
- 우대대상은 평가점수와 무관하게 '0' 순위

< 우선순위 우대 대상 >

- ① 환경부 주요 정책사업에 참여한 다음의 기업
(단, '다~카' 목의 경우 신청일 기준 선정 또는 지원 중인 기업에 한 함)
 - 가.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유효기간 5년 내) 기업
 - 나. 최근 5년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상용화 지원사업 성공 판정 기업
 - 다. 에코스타트업 지원 사업
 - 라. ESG 컨설팅 지원 사업
 - 마. 녹색혁신기업 성장 지원사업 프로그램
 - 바. 스마트생태공장 구축사업
 - 사.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 아. 우수 환경기업 해외수출기업화 지원사업(Green Export)
 - 자. 환경기술 국제공동 현지사업화 지원사업
 - 차.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입주기업
 - 카.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
- ② 영세기업(업력 2년 이상, 근로자 10인 이하 및 매출 25억 이하)
- ③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라. 우선지원 순위 평가 기준 및 점수 (제17조 제1항 관련)

구분	번호	내 용	제출 서류	점수
글로벌 성장성	1	우수환경기업 해외수출기업화 지원사업 선정기업(최근 3개년)	선정 공문(환경산업협회)	5
	2	환경기술 국제공동현지 사업화 지원 참여기업(최근 3개년)	제출 불필요(기술원 확인)	5
	3	중소벤처기업부 수출 유망 중소기업 지정(유효기간내)	해당 지정서	1
	4	환경분야 해외사업(환경산업체에 한함)	제출 불필요(기술원 확인)	2
환 경 기 술 우수성	5	환경 분야 해외국내 특허 실용신안 소유(상표권 제외) 및 실사권 보유	해당 증서	2
	6	환경 신기술 기술검증 또는 인증 기업	해당 검증서, 인증서	2
	7	환경기술개발사업 우수성과 20선 선정과제 수행기업(최근5년)	제출 불필요(기술원 확인)	2
	8	환경기술개발사업 과제 최종평가 또는 추적평가 결과 '우수' 등급 이상 과제 수행기업(최근 5년)	제출 불필요(기술원 확인)	1
환경부 사 업 연계성	9	녹색경영기업 환경성평가(enVinance) 우수 기업(A~AAA)	제출 불필요(기술원 확인)	3
	10	환경부 환경정보공개 대상 수상 기업	제출 불필요(기술원 확인)	1
	11	환경부 친환경인증 기업(환경표지, 저탄소제품)	해당 증서(한국환경산업기술원)	1
	12	환경부 순환자원 품질표시 인증 기업	해당 증서(한국환경산업기술원)	2
	13	최근 5년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상용화 지원사업 성공 판정 기업	제출 불필요(기술원 확인)	5
	14	환경부 우수환경산업체 지정 기업(유효기간내)		
	15	환경부 에코스타트업 지원 사업 최종평가 결과 "과제(신청일 기준 3년 이내)선정 기업당해연도)		
	16	환경부 ESG 컨설팅 지원 선정 기업(최근 3개년)		
	17	환경부 녹색혁신기업 성장 지원사업 프로그램(최근 3개년)	선정 공문(환경공단)	
	18	환경부 녹색혁신 상생 협력사업 선정기업(최근 3개년)		
	19	환경부 스마트생태공장 구축사업 선정기업(최근 3개년)		
	20	녹색융합클러스터 입주기업	해당 증서	
	21	새활용 산업육성 지원사업 최종평가 결과 '성공' 등급 이상(신청일 기준 3년 이내)	해당 공문(환경산업협회)	
사회적 가 치 부합성	22	영세기업(업력2년 이상, 상시근로자 10인 이하, 매출 25억원 이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5
	23	사회적 경제 기업(사회적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해당 증서	1
	24	장애인표준사업장 또는 장애인기업	해당 증서 또는 확인서	1
	25	환경부 환경일자리 창출 으뜸기업 표창 기업(유효기간내)	제출 불필요(기술원 확인)	3
	26	에너지다소비시설 감축설비 지원사업 및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참여(협약체결) 기업	환경공단, 에너지공단 협약체결서 또는 선정 공문	5
	27	ESG 우수 중소기업	해당 확인서(동반성장위원회)	1

마. 주요 기타 사항

- 신청기업은 우선지원 순위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접수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우선지원 순위평가에 미반영
- 기술원은 신청기업의 포기, 승인취소 등을 고려하여 융자금의 최대 200% 범위내에서 초과하여 승인
- 기술원은 2024년 융자금 예산 내에서 예비 승인하되, 최하위 기업의 승인 금액이 예산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부분을 포함하여 승인
 - ※ 융자 예비 승인 후 융자금 예산이 조기 소진되는 경우 차년도 예산으로 지원

4. 사업 관리

가. 대출신청

- 기술원으로부터 예비승인을 받은 기업은 예비승인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급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 승인액의 일부(10% 이상) 또는 전부를 대출
 - ※ 다만 특별한 사유 없이 최대 60일 이내에 융자금 대여를 하지 않는 경우 기술원은 융자금 사용 취소 처리할 수 있다.

나. 사업 변경

- 융자승인기업은 융자승인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융자시스템 (<http://www.ecosq.or.kr>)을 통해 변경 내용을 신고
 - 융자승인 변경 : 기업정보 및 융자금 사용 내역, 융자금 사용기간 등 변경
 - 융자승인 포기 : (예비)승인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 포기
 - ※ 기술원은 융자 승인기업이 변경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승인된 융자를 취소할 수 있다.

5. 완료 보고

가. 용자금 사용 완료보고

- 용자 사용기업은 사용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정책자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완료 보고서와 증빙서류를 작성 및 제출
 - 제출 거부 또는 사용 증빙을 못 하는 경우 용자금 일부 또는 전부 회수

나. 용자금 사용 성과조사

- 기술원은 용자금 사용기간 완료일 이후 용자금 사용 성과에 대한 조사를 진행, 용자 사용기업은 기술원에서 요청하는 인터뷰 및 자료 제출(2회)에 성실히 응해야 함

다. 완료보고 제출 서류

번호	제출 서류	용자금 사용 내역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상세내역)	• 용자금 사용 내역에 대한 증빙 자료 • 국세청 부가세 신고 완료 후 보완 제출 가능
2	시공사, 매입처 등 대금 입금 내역 증서	• 시공사, 매입처 통장사본, 무통장 입금증 등
3	용자 지원된 시설물의 완공 사진	• 건축, 시설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등 사진
4	인·허가에 따른 허가증, 신고필증	• 인·허가 또는 신고 등의 필증을 득해야 하는 경우 제출 (예)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배출시설설치 허가신고 필증, 가동개시 수리 처분 내역(을 지) 등 필증
5	준공계 및 공사완료필증	• 시설공사, 토목공사 등 용자 지원 시
6	공장등록증, 건축물대장, 건축물 사용 승인서	• 건축물 용자금 지원 승인 및 사용 시
7	차량등록증	• 차량운반구 구매 자금 지원 시 (예) 지게차, 방통설치 운반차량, 집게차 등
8	폐기물처리업 인·허가증 및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필증	• 용자신청 당시 '적정통보서' 제출한 경우 •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 시설 설치 완료 후 발급되는 각종 행정 인허가와 신고필 서류
9	기타 용자승인 및 지원범위 내 비용지출 증빙	

- 붙임 1. 환경정책자금 대출심사 가능 사전상담 확인서.
2.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신청 서약서.
3.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신청서 서식.
4. 융자 예비승인서. 끝.

환경정책자금 융자금 대출심사 가능 사전상담 확인서

□ 융자금 신청 기업

- 회 사 명 : 미래환경산업 (사업자번호 :)
 ○ 소 재 지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1
 ○ 대 표 자 : 김한국
 ○ 융자신청 예정액 및 대출심사 담보 확보 계획

융자 신청 금액	담보 확보 가능 예상
2,000 백만원	합계 : 2,500 백만원

담보물 (부동산 등)	물건 소재지 (보증기관명)	소유자 (관계)	시세가등 금액 (백만원)
보증서	기술보증기금	-	1,000
부동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1	본인	1,500

□ 융자금 취급 금융기관

본 은행은 위 기업의 환경정책자금 융자금 신청 계획에 대하여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당행에서 대출(여신)심사 진행이 가능한 기업임을 확인합니다.

본 확인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정책자금 융자승인 내용에 대한 대출(여신)심사 결과와 대출승인을 보장 또는 확약하는 것이 아니며, 향후 위 기업에 대한 실제 평가와 대출(여신)심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은행: 민간은행 지점: 불광동지점
 소속: 기업대부계 성명: 차장 이환경 (직인)

20 . .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서 약 서

- 상 호 :
- 소 재 지 :

1. 상기 본인은 사전에 융자지원사업의 다음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가. 융자금 지원 기본 요건 : 대상 사업자, 지원범위, 제한·제외 사항
 나. 기술원 기본심사와 은행 신용심사 후 융자금 대출지원 절차·방식
 다. 융자승인 후 자금인출 기간, 총 자금사용 기간 등 각종 준수 기간
 라. 융자금 사용 완료 후의 “완료보고” 의무
2. 상기 본인은 다음 사항에 거짓 또는 오류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가. 신청기업의 회원정보, 소재지, 연락처(전화, 팩스, e메일, 휴대폰)
 나. 융자금 신청서의 각 해당 항목에 기재한 내용(금액, 거래처 등)
 다. 융자신청에 따른 각종 구비서류 및 제출서류
3. 상기 본인은 융자지원 후 정책성과분석을 위한 “사후 정보·자료 요청”에 성실히 협조하며, 융자지원 시설과 장치를 적법하게 설치·운영하겠습니다.

금번 융자신청에 있어서 상기 본인은 위 확인사항과 「환경정책자금 융자 운용요강」에 위배될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제반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 이행할 것을 본 문서로써 확인합니다.

2 0 . . .

대표자/대표이사 : _____ (인, 서명)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붙임 3
환경정책자금 융자신청 서식(예시)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성장기반자금) 신청서						처리기간	
						접수마감 후 7일 이내	
업체명	회원정보		접수번호	0000-00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회원정보		설립일자	
대표자	회원정보		법인등록번호	회원정보		회원정보	
본사	주소	회원정보					
	전화	회원정보		팩스	회원정보		
신청 사업장	주소	직접 입력			산업단지 입주여부	산업단지명 직접 입력	
	전화	직접 입력		팩스	직접 입력		
업종	회원정보		업태	회원정보		주생산품	회원정보
표준산업분류(KSIC)		직접 입력		환경산업특수분류		직접 입력	
홈페이지	직접 입력		상시근로자수	직접 입력 명	기업규모	☐ 중견기업 ☐ 중소기업	
환경오염배출 인·허가 보유 사항		직접 입력(수질 *중, 대기 *중 등)		환경 업종·영업 인·허가 등록 사항		직접 입력(환경시공등록 등)	
신청 내용	융자신청 제목 (공사명 또는 자금 주요용 도)		직접 입력				
	시설공사기간 또는 자금사용기간		(착공착수일) 0000.00.00 직접 기재			(완공예정일) 0000.00.00 직접 기재	
	총소요비용		00000 백만원		융자신청액		00000 백만원
	담당자 1	성명	직접 입력	직책	직접 입력	e-mail	직접 입력
		부서	직접 입력	전화번호	직접 기재		휴대폰
	담당자 2	성명	직접 입력	직책	직접 기재	e-mail	직접 입력
		부서	직접 입력	전화번호	직접 입력		휴대폰
	융자금 취급은행		000 은행 000000 지점		은행 담당자	0 0 0	전화 번호
상기와 같이 융자를 신청하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0000 년 00 월 00 일 신청인(대표) : (날인·서명 생략)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 하							

사업계획서

1. 사업장 개요

영업 현황	전년도 매출액	상시 근로자수 현황	전년도 사업장 가동현황	
	백만원	명	총 _____ 일, 1일 평균 _____ 시간	
환경 분야 보유 인허가 사항				
수출실적	주요 수출제품		주요 국가	원화기준
□있음 □없음				백만원
				천USD
				백만원
				천USD

2. 추진계획

자금사용 목적 및 기대효과	100자 이내									
융자금지출 계획일정 (단위: 백만원)	1차		2차		3차		4차		5차	
	일자	금액	일자	금액	일자	금액	일자	금액	일자	금액
	00.00		00.00		00.00		00.00		00.00	

3. 자금소요내역

(단위: 백만원, 부가세 제외)

내역구분		내 용	수량	총소요금액	융자신청액	시공사·매입처
1차	2차					
합 계				자동합산	자동합산	
구분 ▼	구분 ▼	스펙, 규격, 용량, 명칭 등	숫자			

<참고> 자금사용 내역 구분(콤보) 선택 항목 보기

1차	2차
인건비	인건비
운영비	원료구입비, 각종 인허가비용, 인검증특허 비용, 시설 임차료, 설비운전 연료비, 장비 수리비, 수도·가스 요금, 차량운반구 유류비, 해외사무소 운영비
홍보비	광고비, 판촉비, 기타 홍보비
기타비용	폐기물처리비, 판매납품 운송비, 기타 비용

붙임 4

용자 예비 승인서

승인번호		승인일자		미래환경산업육성용자 예비승인서		
2023-4110-1234-0		2023-05-08				
상호(업체명)	영일기업(주)		대표자	이삼사		
사업자번호	567-89-01234		지원분야 1	녹색전환		
법인등록번호	123456-7890123		지원분야 2	오염방지시설자금		
용자지원사업장	서울 은평구 진흥로 215(불광동)					
본사/본점	서울 종로구 인사동 123		본사 사업자번호	123-85-67490		
승 인 내 용	용자승인액	일금이억삼천사백만원(₩234,000,000)		취급은행	국민은행 종로지점	
	구분1	구분2	시공사(지급처)		승인액(백만원)	
	기계공사	기계공사	농신공업		100,000	
	전기공사	전기공사	삼선전자		100,000	
	기계공사	기계공사	일상인터내셔널		34,000	
	기계공사	기계공사	두상인프라코어		34,000	
	공란					
	최초인출기간	2000-00-00 ~ 2000-00-00		대출기간	3년거치 7년상환	
	용자금사용기간	2000-00-00 ~ 2000-00-00		대출금리	분기 고정금리	
중 요 사 항						
1. ‘용자승인’은 취급은행 대출심사 및 채권보전 조치 후 용자를 받을 수 있는 조건부 승인 2. 용자금의 대출기간, 대출금리 등 용자조건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용자금은 부가가치세 및 취급은행의 각종 수수료, 인지세 등 기타 다른 용도로 사용 불가 4. 용자금은 위 표시 내용과 기술원에 제출한 용자신청서 내용에 따라 사용하며, 사전 변경요청에 따른 기술원의 승인 없이 무단사용 시 용자승인 취소 및 용자금 강제회수 5. ‘시설’에 대한 용자금은 취급은행에서 상기 시공사(지급처)의 예금계좌 입금이 원칙(예외 있음) 6. 최초인출기간 내 용자승인액의 10% 이상 대출 또는 대출신청하지 않는 경우 용자승인 취소 7. 사용기간 내 용자승인액 전액을 미사용하여 잔액이 발생한 경우 잔액은 지원 불가(승인취소) 8. 취급은행 대출심사 및 자체 사정에 따라 위 용자승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않을 시, 기술원에 포기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정기간 동안 용자지원 불가. 9. 당해연도 용자금 예산부족(예산소진)시 미사용 용자금은 지원이 불가능하며, 용자요강에 따른 기술원의 검토 후 다음 연도에 미사용 용자금의 지원이 가능 10. 용자승인 기업은 용자요강을 성실하게 준수하고 환경부와 기술원의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위반, 거부 및 이행지체로 인한 처분과 불이익은 모두 용자승인 기업의 책임입니다.						
환경정책자금 용자운용요강에 따라 위와 같이 용자금 지원을 승인합니다. 발급일 0000-00-00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인 출력일 0000-00-00						